

신 무역질서하의 EU 경쟁정책

— 국제협력 및 규범강화 —

조 사 부

1.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제2차 대전 이후 시장개방이 진전되어, GATT 하의 8차 라운드의 결과 관세 등의 교역장벽이 인하되어 왔다.

당초 GATT 관세는 35% 정도 수준이었으나 미국, EU, 일본 등

편집자 주) 본문은 UR 이후 차세대 라운드로서 거론되고 있는 경쟁법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EU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이며 경쟁법은 환경, 기술, 노동 등 차기 라운드 중 가장 기업활동 및 경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은 이러한 라운드의 조속개시를 국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등 보고서는 주로 독과점, M&A, 카르텔 등 기업의 시장경쟁 왜곡 가능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 조화와 이를 위한 쌍무 및 다자간 협력구조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는 바, 차기 우선 라운드로 예상되고 있다.

OECD가입 및 자본·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둔 아국 기업으로서 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독을 권한다.

의 공산품 가중평균 수입관세는 UR합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4% 이하가 될 것이며, 약 40%의 수입품들이 무관세가 될 것이다.

이런 다자관계의 발전과 같이 상호주의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들도 만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세계 교역의 성장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상회했으며, 무역은 경제확장의 추진체가 되어 왔다.

미시적으로 이러한 자유화의 영향은 국제 경제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 기업들이 신규시장과 제품을 찾는 경영의 글로벌화가 진전되어 왔다.

통합적 국제 생산방법을 채택하여 지역적 비교우위 생산이 극대화 되었으며, 완제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왔다.

이렇게 자유화와 글로벌화의 쌍방발전의 효과로 완전한 통합적

체제가 아니더라도 세계 각처의 시장을 상호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UR이후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법의 효과적인 적용이 시장접근과 개방을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을 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반면, 개별기업의 관행을 다자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쟁법의 효과적 적용문제는 아직 현재의 국제법규 체제에는 없는 개방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는 달리 경쟁주체간 국제협력 강화와 일련의 국내법규 및 절차들의 1차적 통합이 요망되어 지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경제의 글로벌화 시대에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국제적 카르텔, 수출카르텔, 대기, 해양, 수송 등 국제적 분야의

제한행위, 세계적 수준의 합병(예: BT-MCI²), 우월성 남용(마이크로소프트사) 경쟁당국은 따라서 경쟁법규의 효과적 강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국제적 수준의 규범결여로 몇몇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종종 각국의 서로 다른 경쟁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절차와 기한, 의사결정 기준 등이 매우 상이하어, 합병이나 담합행위가 국가에 따라 금지 또는 승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법률비 등 비용인상과 함께 불확실성을 높이며, 무역과 국제투자 확대를 가로 막는 주요 장벽이 될 것이다.

셋째, 일부 국가들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가 심하지 않아 왜곡될 수 있으며, 해당국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추가적 경쟁체제를 외국기업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종 폐쇄시장의 개방을 결과 할 수 있다.

넷째,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쟁법의 지역적 범주를 확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 해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경쟁 당사자들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협력이 없는 가운데에는 해외국의 경쟁왜곡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는데 법적, 실제적 장애가 있어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한 경쟁주체가 경쟁왜곡(침해)에 대한 제소 포기의 우려도 있다.

다섯째, 특별히 개도국들은 반경쟁 행위의 효과적 통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UR체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지적소유권 등 정부시장접근 장벽들의 범세계적 하향추세로 이들은 반경쟁 행위의 위협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많다. 적절한 국내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여 다른 나라 경쟁법들의 역외 적용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UR협정의 긍정적 결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WTO 설립 협정이 다수의 경쟁관련 규정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WTO하의 협상들에서 독과점, 서비스교역, 지소권, 무역관련투자조치 등과 같은 무역관련 규정들의 경쟁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권고들이 많이 나와 왔다.

동시에 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쟁의 제한에 대해 좀더 제도적이며 완벽한 접근이 필요하다.

2. EU의 협력

EU는 경쟁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국제적 경쟁법규 개발 및 강화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1) EU내 협력

현재 발효 중인 여러가지 경쟁관련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 경쟁관련 기관들은 EU집행위의 자체 경쟁법 권한에 의한 절차들에

연계되어 있다.

다음의 규정들이 본 보고서의 취지에서 볼때 특별히 중요하다.

대외비 정보를 포함 집행위가 기업들로 부터 얻게되는 각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각국 경쟁관련 기관에 송부되어야 하며, 기업 공청회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각각 경쟁기관들은 '제한 및 독과점' 자문위와 '합병관리' 자문위에서 개별케이스에서의 결정 초안에 관한 견해를 공표해야 한다.

회원국 기관은 기업 현지 실시시 집행위를 지원하거나, 또는 집행위가 요청할시 직접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경쟁법 개발과 국별 관할기관설립은 집행위와 국별기관간의 협력증진의 기회를 주었으며 오늘날 이전보다 폭넓게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 역외국과의 협력

EU회원국과의 협력경험 외에 EU는 인접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집행위와 EFTA 조사기관(Surveillance Authority)과의 정보교환 등 협력모델을 설정하여 상대국의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는데, 이는 대외비에 대한 EU의 정상적 법규로부터의 예외를 인정한 협정서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중·동구와의 협력은 "Europe Agreements"의 이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쟁관련기관과 집행위는 상호 절차에 대해 통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으로 금지되었거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도 된다.

3) 미국과의 협력

EU는 1991. 9. 23 미국과의 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 상대국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 통보하며 경쟁법 강화에 협력하고, "Positive Comity"(긍정적 조화) 규정을 두어 상대국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Negative Comity" 개념을 도입하여 상호간의 중요한 이해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대외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정으로 다수의 정보교환 및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한편 대외비 정보교환 금지는 보다 긴밀한 협력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 'Microsoft Case'의 경우 관련기업이 대외비 정보교환에 동의했던 바 양국 경쟁당국은 무난히 협조하여 사안을 해결했었다.

4) 제3국과의 협력

제3국과의 협력은 1986. 6. OECD 권고안 하의 단순 정보교환 및 소수의 비공식협의 정도이다. 일본과도 일반 정보협의 수준의 회의 및 '93. 11, '94. 9 두차례에 걸쳐 세미나 개최 정도에 그

치고 있다.

3. 경쟁분야의 국제협력 제한

1) 여전히 제한적인

쌍무협력

미국과는 달리, EU가 체결한 쌍무적 독점금지 협정이나 상호법률지원 협정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대외비 정보교환 제한과는 별도로, 현존 협력 사례의 제한은 주로 경쟁법과 그것의 시행이 국가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U법은 기업 효율성 증대 또는 자원배분 개선, 그리고 역내시장의 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역내 시장통합의 경우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리 중점을 두지 않고 있어 우월성의 남용이나 수직적 체제 등에 대해 EU와의 접근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경쟁법의 시행이 해당국 일반정책과 항상 독립적이지 않으며 또한 미국과의 쌍무협정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

2) 경쟁법의 국제체제 및 범세계적 일반규정 부재

국제적으로 경쟁법 도입은 전후 하버나현장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나 주요국들이 이의 인준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이후 국제경쟁법 기본체제 설정 노력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영업행위 제한에 대한 회원국간 협조를 요청하는 1986년 OECD 권고안에도 불

구하고 공진을 거듭하여 왔다

회원국 경쟁기관간 정보 및 협력교류가 부적당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WTO 하의 국제무역 등과는 달리 경쟁분야에는 분쟁이나 차이를 조정해 주는 조정 및 중재절차가 아직 없다.

우선적인 결론은 경쟁기관들이 규정이나 절차의 통일 또는 경쟁법을 상호 엄격히 시행하는 등 상호협조를 통한 실제적 결과를 달성할 요인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특별히 엄격한 경쟁기관이 쌍무협조를 비교적 덜 엄격한 상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1994년 마라케시 UR 각료회담에서 WTO에 경쟁정책과 관련한 규범설정이 논의되어 WTO출범 5년 이내에 상품관련 이사회에서 경쟁관련 다자규범을 제정토록 합의되었던 바가 있다(Article 9, 무역관련 투자조치 : TRIM)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문에서는 (Article VIII, IX)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행위를 취급한 일련의 규범들을 갖고 있다.

TRIPS(지소권협정)에도 지적소유권과 라이선스 남용을 방지하는 경쟁법 도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등 관리경제 국가들의 WTO가입 협상에서도 시장접근에 대한 추가적 보충으로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을 위해 GATT 규정보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등 경쟁법 관련 다자적 접근의 기

회가 무르익어 왔다.

4. 경쟁정책 규범강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권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기업 차별이나 수출 카르텔 구성 등 여러가지 국제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경쟁법 조화에서의 어려운 문제점들이다.

예를 들어 국제 카르텔의 경우 경쟁당국간 소송 개시에 관한 협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당국간의 역량차이 및 입증에 관한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쟁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나 정보교환 등이 필요한 것이다.

1) 국제적 경쟁기관 및 법제

계적 경쟁코드 : 장기전망

개별국 법을 우선하는 국제 경쟁코드와 이의 시행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설립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우선 OECD 취지에 맞게 현존하는 개별국가 법을 좀더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최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경험의 축적으로 법규통일에 수반될 수 있는 개별기관의 독립성 상실부문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적 전망에 앞서, 중간단계로 현재는 아직 적절한

국내 경쟁법을 갖지 못한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기왕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쌍무협력 강화

미국/호주, 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 미국/독일, 미국/EU 등 최근들어 여러가지 쌍무협정이 조인되었으며, 기타 협정들도 현재 협의 중이다.

이러한 협력에서 경쟁기관들의 역할은 경쟁제한 행위의 적발과 국내법의 역의 적용으로 야기되는 분쟁 회피에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보통 상대국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해당국 법적조치의 시행을 제한하는 "Negative Comity"(부정적 조화)를 증대한다.

그러나 부정적 조화의 원칙적용으로 경쟁법의 강화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반대로 각 Case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Positive Comity"(긍정적 조화)와 경쟁기관 간의 협력증진은 이후 GATT 라운드들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EU의 가장 교훈적인 협력 경험은 미국과의 쌍무협정이다.

비록 이것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 경험도 범위의 제한이 있다. 범대서양 관계 및 제 3국과의 관계모델로서 미국과의 협정은 우선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쌍방간 일방적 조치를 사용치 말아야 하고 또한 상호주의 원칙으로 정보교환에 적용되는 대외비 규정에 대한 현재의 장애를 철회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측으로서는 최근의 신규규정 채택으로 이러한 문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EU측은 대외비 자료의 보호가 EU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EU/미국간 협정강화가 향후 수개월 집행위 활동에서 최우선되어야 하며 일본 등 기타 상대국들과도 상호협정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쌍무협정은 트러스트법이 충분치 못한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EU간 협정에서의 "Positive Comity"절차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점진적 다자협정체

구성에 관한 권고

역의 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효과적인 적용에서의 상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쌍무협정은 모든 문제 특히 분쟁해결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때문에 상업분쟁은 공동으로 결정된 경쟁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절차의 부재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역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한행위의 효과적 감시와 국가 경쟁정책의 부재나 이질성으

로 부터 결과하는 상업분쟁의 위협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 규정에 근거한 체제와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되어 진다.

이와같은 취지로 체약국 간 그리고 경쟁기관 간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다자협정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지역적 포함 범위와 일반규범의 결정 그리고 새로운 구성체의 설립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 협정의 지역포함 범위

협정의 지역범위는 세계 여러 교역상대국들을 포함하여 경쟁법 시행의 차이로부터 오는 왜곡을 줄여야 한다.

① 현재 경쟁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3개지역이 있다.

- 미국/캐나다(범죄적 침해에 대한 소추)
- 호주/뉴질랜드(경쟁법 통일, 정보교환)
- EC/EEA(현재 중·동구지역으로 확대)

또한 이들 3지역간 독일-미국, EC-캐나다 등의 교차협정도 있다.

비록 "Positive Comity"같은 중요한 규정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협정들도 대외비 정보교환 불가 등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상호 연관성(interconnection)의 문제를 여전히 극복해야만 하지만 모든 관련 국가들은 그들간의 협력경험에 비추어 불때 다자간 구조의 설립회원이 되어야

만 할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몇몇 아시아국가들 및 남미 공업국들도 포함되어야만이 이러한 구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미국과 EU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들 국가들에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중인데, 명백한 것은 다자간 경쟁규범을 설정했다 해도 이러한 무역보복조치의 철회로 즉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경쟁정책의 시행 그 자체로 모든 케이스에서 시장개방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발효가 되어 국제적 압력으로 자극받게 될 때 무역정책의 입안자들은 경쟁법의 엄격한 시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요인들을 감안 다음과 같이 권고함.

- 1단계에서 OECD국가 및 홍콩, 한국, 대만, 중·동구 국가들로 구성될 수 있는 국가그룹내의 다자협정 협상(기타국들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용할 경우는 참여)

-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에게 확대와 같은 목표는 WTO 설립협정서 Annex4 하의 다자협정으로서 경쟁협정을 완결지음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통합, NAFTA, 호주/뉴질랜드 간 경제무역협정 등에서의 실제적 경험들이 중요하다.

나. 일반규정 결정

단순한 "Comity"협정 이상의 그리고 분쟁해결 구조 설립 등의 계획은 최소 원칙리스트에 관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들 원칙들은 참여국들의 국가법에 포함되어 각국은 달성한 결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하는 등 많은 부분 "European Directive"들과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채택되어야 할 일반원칙들의 상세 리스트를 정하기에 아직 너무 이른감이 있으나 상기 국가들간의 가격담합, 공급제한 또는 시장점유 등 수평적 카르텔 금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유형의 협력협정들도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배제되어서는 않된다. 이 경우 "Rule-of-reason"(사유의 법칙)접근법이 바람직하다.

수직적 협정은 경쟁측면에서의 수용가능 조건에 대해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가지 해결책으로는 경쟁의 제한적인 영향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상쇄되지 않거나 또는 시장접근에 장애가 되는 협정들을 금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월(독점적)지위의 통제와 관련, EC설립조약 'Article 86'과 같은 정책이 기업의 우월지위 남용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부문에서 최우선점이 OECD 연구보고서 "Whisk Wood"(OECD 합병절차 조화계획)에 근거하여

조사기간 제한 등 절차의 통일에
주어져야 한다.

국가독점 또는 특정 특권기업과
관련한 GATT Article X VII이
강화되어, 이들 기업들이 상행위
를 영위하고 있는 여타의 기업들
과 같은 법규에 저촉되어야 한다.

다. 새로운 구조(조직)설립

다음의 세가지 기능을 하는 국
제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① 포럼으로서 기능

일반 원칙의 국내법화 및 시행
에 대한 기안, 항시적 검토, 채택
: 이러한 업무는 경쟁과 무역간의
모든 관계적인 측면에 분석하는것
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다.

② 반 경쟁행위 등록

등록은 처음에 특정 기준을 충
족한 기업(또는 카르텔)과 관련
한 개별케이스들만 관계될 수 있
으며 이는 계약국들이 통보한 건
에 근거될 수 있다.

등록은 비통보된 제한된 행위들
로도 보완될수 있는데 비통보 제
한행위는 이를 사용한 국가 이외
의 국가들을 통해 국제기구에 접
수된 것 등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제한행위에
법적용을 할 회원국에서 사실 여
부 및 적용 조치내용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는 기타
국가들에게 회람될 수 있다.

③ 참가국들간 분쟁해결 구조 (조직)

절차적 수준에서는 WTO분쟁
해결 메카니즘이 비록 경쟁 케
이스의 속성상 재고의 여지가 있는

시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들이 어
느 정도 있으나 경쟁기관들의 행
위와 관련된 분쟁조정 구조와 상
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제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설정

국제 통상법 및 GATT/WTO
분쟁해결 제도와 같이 다자간 경
쟁협정에서의 국제분쟁 해결 제도
는 국제규범의 국내적용과 실제
상황에의 적용 등에 관한 여러가
지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틀로서
작용해야 한다.

마) 개입가능 분쟁 유형

① 국제절차상의 의무에 관한 분쟁

통보되지 않은 반경쟁행위의 경
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한 정보
가 부적절하거나 논쟁이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국가는 다자
협력협정(PCA)하의 의무를 청원
할 수 있다.

② 국제적 금지행위에 대한 분쟁
상대국으로부터 긍정적 조화
(Positive Comity)에 따른 Case
를 의뢰받았으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
였을 경우 PCA분쟁해결 패널에
소추할 수 있다.

③ 국제적 “사유의 규정”(rules -of-reason)에 대한 분쟁

4) 권고요약

①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일반
적 이해를 같이 할때, 관련 국가
들은 적절한 경쟁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 등으로 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
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점진적 접근법(The build- ing blok approach)

- 쌍무협정을 강화해야 하며 이
와 관련 미/EU간 차세대 협
정(Second Generation)이 최
우선된다. 이 협정은 경쟁당국
간 보다 밀접한 협력의 기본틀
을 조성할 것이다. EU로서 필
요한 다음단계는 일본과의 쌍
무협정이 될 것이다.

- 다자간 체제를 발전시켜 기존
의 쌍무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요소외에 최선의 적
절한 경쟁법과 “공정적 조
화”, 분쟁해결메카니즘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다자간 체제는 핵심규칙과
핵심그룹군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
적일 것이다.(EC, OECD, 중·동
구 및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효과적인 경쟁법 시행 구조의
설정은 매우 발전된 법적 수단 및
해석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다자협정은 지역적 범위 및 실질
적 적용범위(substantive cover-
age) 그리고 감시체제 등에서 도
미노 현상을 통해 전향적으로 개
발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감시구조는 국제법규를 국내법
으로의 전환과 이러한 일반규정의
시행 및 준수여부에 초점이 두어
져야 할 것이다.

③ 다자 및 쌍무협정이 상호보
완적인 바, 동등하게 발전될 수
있다.